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0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상매일신문사(경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28번길 2
대표이사 천기화

심의대상기사 2026년 3월 23일자 2면 「예천군수 여론조사 ‘도기욱’ 선두···3자 경쟁 우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천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김 형 철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조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1

언 론 사 주식회사 포천뉴스(포천뉴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 1508
대표이사 고정숙

심의대상기사 2026년 3월 11일자 1면 「6·3 지방선거 시장·시·도의원 누가 나오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포천시장 및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등록 현황을 보도하며, 포천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부각 보도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김 형 철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2

언 론 사 대전투데이 주식회사(대전투데이)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표이사 김현정

심의대상기사 [별지 1] 기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대전투데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대전투데이 2면에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제목(3월 23일자 기사 「성광진 “지역아동센터 돌봄에 교육기능 강화…공교육 연계”」)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교육감)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어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김 형 철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2월 6일자 7면 「“사전예방 원칙,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제하의 기사
2. 2026년 2월 23일자 7면 「“공정한 배움·청렴한 교육 행정·안전한 학교 실현”」 제하의 기사
3. 2026년 2월 25일자 2면 「성광진,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공약 “함께 배우는 대전”」 제하의 기사
4. 2026년 2월 27일자 7면 「성광진 예비후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5. 2026년 3월 3일자 7면 「성광진 “피해 학생 끝까지 보호… 24시간 학교폭력 대응”」 제하의 기사
6. 2026년 3월 5일자 2면 「“학생이 설계하고 함께 만드는 미래학교 구축”」 제하의 기사
7. 2026년 3월 6일자 2면 「성광진 “악성민원은 학교가 대응… 교사는 수업에 집중”」 제하의 기사
8. 2026년 3월 9일자 2면 「성광진 “학군 갈등 방치 안 돼…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 제하의 기사
9. 2026년 3월 13일자 2면 「성광진 “느린 학습자도 끝까지 책임… 기초학력 책임 보장”」 제하의 기사
10. 2026년 3월 18일자 2면 「“AI로 학생 학습성적 관리… 대전형 미래교육 구축”」 제하의 기사
11. 2026년 3월 20일자 2면 「“전일제 특수학급 증설,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제하의 기사
12. 2026년 3월 23일자 3면 「성광진 “지역아동센터 돌봄에 교육기능 강화… 공교육 연계”」 제하의 기사
13. 2026년 3월 24일자 2면 「성광진 “악성 민원,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책임진다”」 제하의 기사
14. 2026년 3월 26일자 3면 「성광진 “학교장 책임 줄이고, 학교시설 개방 확대”」 제하의 기사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교육감에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하여(2026년 2월 6일자 7면 「“사전예방 원칙,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등 14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 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정

의결번호 제9회 지선-시심3

시정요구인 김동철
울산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광역매일(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 신정로68번길 2
대표이사 유정재

심의대상기사 2026년 3월 25일자 3면 「김동철 전 시의원, 선거법 위반 피고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별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울산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시정요구인이 모 음식점에서 특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출마 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은 해당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일 뿐 음식점 행사에 관여한 바 없고, 지지 요청이나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해당 건물에 자택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 신분으로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잠시 신년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보도가 지자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실과 그 내용을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된 기사이며, 위법 사실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한 바도 없으며, 고발장과 취재원 접촉 등을 거친 보도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시정요구인의 명예와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 또는 후속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양측이 제출한 내용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실제로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 해당 장소에서 시정요구인이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심의대상기사가 선거에 관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에 대한 여론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인데 반하여, 심의대상기사에는 고발인의 주장만 담겨있고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론보도문 게재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시정요구인이 심의 전인 2026년 3월 31일자 3면에 시정요구인의 입장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이미 게재한 사실을 감안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의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의대상기사로 인해 시정요구인 및 여타 예비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김 형 철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 <김동철 전 시의원, 선거법 위반 피고발> 관련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4일자 3면 <김동철 전 시의원, 선거법 위반 피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김동철 예비후보가 특정 식당에서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출마 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지지 기반을 형성하려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 후보는 해당 식당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일 뿐 식당 운영 및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향응 제공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특정 단체를 상대로 지지 요청이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자택이 해당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어 출입 과정에서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신년 인사를 잠시 나눈 것이 전부이며, 이를 정치적 목적의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2.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